

인증심사비: 30만원

*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제출한다.

구분	심사항목 및 제출서류
1	<p>영양집중지원팀은 각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구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병원 내 공식적인 위상을 보여 주는 기구표 혹은 조직도 · 제위원회 명단 · 위원(장) 위촉장, 임명장, 인사발령 등의 공문서 · 상기 세 항목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
2	<p>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, 약사, 간호사, 영양사로 구성된 다직능 집단이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양집중지원팀의 명단 및 직책이 표시되어야 한다. · 간단한 이력의 표시도 가능하다.
3	<p>각 직능별 구성원 모두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회원 가입 및 인증사업 신청 당해연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.
4	<p>업무지침서(업무규정, 업무분담표 포함)를 구비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규정, 업무분담표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. · 기본적인 내용상의 부실이나 미비 여부를 평가한다. · 학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양식(업무분담표, 직종 역할 등)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.
5	<p>주 1회 이상의 팀회전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, 보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 1회 이상의 모임이나 회진이 증명되어야 한다. · 회진 대상 환자의 정맥영양 또는 경장영양을 통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 · 정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, 간 기능, 전해질 수치 등의 모니터링 및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. · 경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, 위장관 기능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. · 최근 한 달 회진 리스트와 실제 사례(최소 20건)를 제출한다(단, 환자개인정보처리는 자체 화면 수정).
6	<p>월 1회 이상의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, 보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에 대한 연간계획표가 마련되어야 한다. ·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 후 증명할 수 있는 강의자료, 참석자명단(서명 포함)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 · 최근 3개월 자료를 제출한다.
7	<p>년 1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또는 관련 논문의 발표를 권장하며, 그 밖의 여러 활동에 대한 세부 평점을 규정하고 최소 10평점 이상을 만족해야만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기평가 평점인정 기간: 신청일 이전부터 1년 기준 <p>세부 평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SPEN 주관 학술대회, 워크샵, 심포지엄 참석 인원: 1점/인 (참석자 명단: 행사명, 직종, 이름 포함) · ACNM(구 JCN) 논문발표: 종설, 원저 10점, 증례보고 5점(초록집 제출) · KSPEN 학술대회 발표(구연, 포스터 포함): 5점(초록집 제출) · KSPEN 주관 교육 참석: 5점(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) · KSPEN NST-PEP 교육, ESPEN LLL 교육, INPT 교육(IV Nutritional pharmacotherapy) · NST 관련 학회 교육 참석: 5점(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: Clinical Nutrition Program(CNP)(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) Pediatric TNT(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) CNC(Comprehensive Nutrition Care)(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) - 약사: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: 영양약료(한국병원약사회)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: 중환자약료(한국병원약사회) · KSPEN 관련 해외 학회 참석: 1점(영수증 사본) - ASPEN, ESPEN, PENSA 학술대회 · 각종 매스컴 매체를 통한 NST 관련 기고: 1점 (관련 증빙 사본, 사진) ·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, 심포지움, 집담회의 개최: 3점 (관련 증빙 사본, 사진)